



1. 신고대상 / 기간

대 상	기 간	비 고
학부 / 대학원생 중 군 전역자, 일반복학자	'24.8.1(목)~8.26(월)	전반기 복학자 중 재학생은 우편 / FAX / 방문신고만 가능
신입생(학부/대학원)	'24.9.2(월)~9.13(금)	학적생성 이후부터 신고

※ 학부졸업생 중 자대 대학원 진학자는 신입생 신고기간에 보류자(전입)신고를 해야 함

2. 신고방법

- 가. 복학생 : 가) 학교 포털에서 복학신청 시 예비군 전입(보류)신고 병행
나) KUPID이용 : 정보생활→「예비군 전입(보류)신고」란 이용 신고
- 나. 신입생 : 학적생성(9.1)이후 KUPID→정보생활→「예비군 전입(보류)신고」란 이용

3. 신고 비대상 (학생예비군 편성 제외자)

학기 초과자				공 통
학부생	일반 및 전문대학원	특수대학원	로스쿨	휴학, 수료(수료재학), 졸업유예자
9학기 부터 (건축학과:11학기)	5학기 부터 (석·박사통합:9학기)	6학기 부터	7학기 부터	

- ※ 졸업, 수료(수료재학), 휴학생 중 9월 이후에도 고려대연대에 계속 소속된 자, 학기 중 학적변동자는 보류해소(전출) 신고를 해야 함
 - 신고방법(메일로 신고 : byong5720@korea.ac.kr) 성명, 사유(휴학 등), 일자, 생년월일, 학기이수 여부
 - 학생예비군 비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, 학생예비군 훈련 이수자로 훈련종결 시 예비군법 제15조12항에 의거 훈련시간 단축목적을 위한 신고자로 간주되며 예비군법 위반으로 고발 됩니다.
- ※ 대학원생 중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소속 예비군은 전입신고 비대상입니다.(해당직장에 신고)
- ※ 의과대학 학적보유자는 고대 안암병원 의과중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 문의(02-2286-1240)

4. 행정사항

- 가. 군번 등 데이터 오기 입력 시 전입처리가 되지 않으며, 현역신분 또는 전역 후 2주 이내자 신고금지(군에서 병무청으로 전역자 명부 미도착으로 전입불가), 예비군 전환 이후 신고
- 나. 신고기간 이후 전입신고자는 우편, FAX 또는 방문 신고 하여야 하며 2학기 대학 훈련 일정(10. 8 / 10. 10 ~ 11)에 편성되지 않고 일반훈련 주기에 편성됩니다.
 - ※ 우편/FAX신고:포털(KUPID)-지식관리-학생지식-학생병무자료-보류자(전입)신고 안내 참조
- 다. 전입신고 관련 안내 : (02)3290-1201

고려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장

